

투자위험등급:
3 등급
[중간위험수준]

하나 UBS 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담성 증권투자신탁[채권]**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담성 증권투자신탁[채권]**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담성 증권투자신탁[채권]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 UBS 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판매회사 영업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11년 2월 16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한 날 : 2011년 2월 21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 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 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고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제 1 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목적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 (1) 연평균 수익률
 - (2) 연도별 수익률

제 3 부. 매입 환매 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 환매 절차
 - (1) 기준가격 산정
 - (2) 매입 및 환매 절차
4. 전환절차 및 방법

제 4 부. 요약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이 투자설명서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여 정식 투자설명서의 표현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명 명칭) | 펀드코드 |
|----------------------|-------|
| 하나 UBS 님성 증권투자신탁[채권] | 99959 |
| A | 99960 |
| C | 99961 |
| C-E | 99962 |
| C-F | A0382 |

2. 모집예정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 조좌

이 투자신탁은 1 조좌까지 모집(판매)이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 주 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2)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예정보다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가. 집합투자업자

| | |
|----------|---|
| 회 사 명 | 하나 UBS 자산운용(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 빌딩 (대표전화: 02-3771-7800) |

주 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 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 | |
|---------|---|
| 해외위탁운용사 | Income Partners Asset Management (HK) Ltd |
| 업무위탁범위 |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 조사분석업무 / 단순매매주문업무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집합투자기구의 주요투자대상

| 투자대상 | 투자비율 | 투자대상 내역 |
|--------------|--------|---|
| ①채권 | 60% 이상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
| ②자산유동화 증권 | 50% 이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 ③어음 | 50% 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
| 기타 | |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기타 다른 투자대상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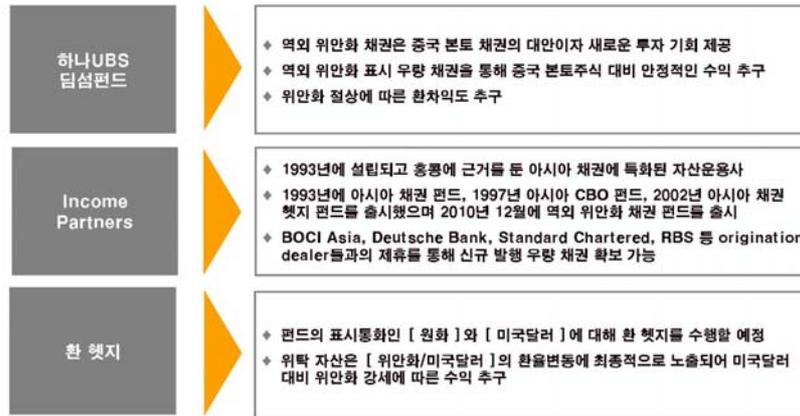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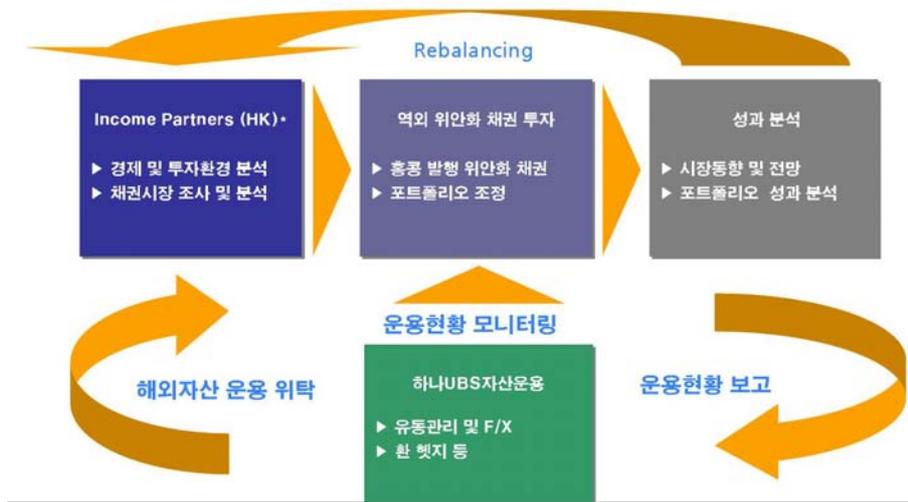
(1) 기본전략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채권의 이자수익 및 향후 위안화 절상에 따른 환차익을 추구합니다.

(2) 펀드투자구조 - **역외 위안화 표시채권(“딩성본드”)**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및 **향후 미국 달러 대비 강세시(절상시) 환차익 수익도 함께 추구**



(3) 운용구조 - 아시아 채권에 특화된 Income Partners 가 운용



(4) 비교지수(Benchmark) : **(IP RMB Bond Index * 90%) + (Call 금리 X 10%)**

Income Partners RMB Bond Index
 홍콩의 채권전문 자산운용사인 Income Partners 에서 구성하여 산출하는 지수로서, 역외위안화표시채권 시장을 추종하는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투자신탁은 본 투자신탁은 위안화 표시 자산(예금, 채권 등)을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지만, 그 중에서 역외 위안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집합투자기구입니다. 성과비교를 위하여 [**(IP RMB Bond Index * 90%) + (Call 금리 X 10%)**]

90%) + (Call 금리 X 10%)] 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축소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 환헷지

- 외화자산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통화선물 또는 선물환 계약등을 통해 헷지하며, 편입된 집합투자증권(외화 채권 포함) 투자금액의 90±10%를 목표로 헷지합니다. 다만, 투자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이 자체적으로 환헷지를 하는 경우 환헷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본 펀드는 표시통화(KRW)와 USD 에 대한 환헷지를 수행하지만, 동 펀드가 투자하는 유가증권의 표시통화인 위안화(RMB)에 대한 환헷지는 실행하지 않으므로 환율변동에 노출되며, 그 관련 위험이 존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투자신탁으로 설정, 해지가 빈번하다는 제약조건하에 환헷지를 수행하므로 투자기간 중 발생손익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만기와 통화선물 만기와 간의 시간차로 인해 rollover 위험이 따르며, 그로 인해 헷지계약 rollover 및 청산과 관련된 추가 거래비용 발생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하나UBS는 원화를 미국달러로 환전 후 위탁운용사에 송금 → 위탁운용사는 24시간 이내에 위안화 자산에 투자
- ◆ 하나UBS는 펀드의 표시통화인 [원화] 와 [미국달러] 에 대해 한 헷지 수행
- ◆ 위탁운용사는 [미국달러] 와 투자대상 자산의 표시통화인 [위안화] 에 대해 한 헷지 하지 않음
- ◆ 위탁 자산은 [위안화/미국달러] 의 환율변동에 최종적으로 노출되어 미국달러 대비 위안화 강세에 따른 수혜 가능



※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회피하거나 줄이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자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운용 도중 환율이 하락할 경우(원화절상)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상승할 경우(원화절하) 환헷지로 인해 오히려 추가 이익의 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헷지 계약의 만기 후 재계약을 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딤성본드 유동성 위험**

- 현재 딤성본드의 유동성은 제한적이지만 신규발행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좋은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다만, 투자초기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적합한 투자대상을 찾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시점까지는 현금, 국내채권, 어음, 예금증서 등 기타 현금성 자산에 자금을 장기간 유치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위탁운용사인 Income Partners 는 딤성본드 신규발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홍콩에 소재한 다수의 신인도 있는 Broker 를 Originating Dealer 로 선임하였으며, 동 Broker 는 market maker 로서 유동성 제공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따라서, 시일이 흐름에 따라 유동성 공급은 충분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적합한 투자기회가 포착될 때까지 운용자금의 상당부분을 현금성 자산에 보유하여 적시에 투자를 집행할 수 있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보유현금의 규모가 클수록 신규발행 참여시 물량 배정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딤성본드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기 까지 본 투자신탁의 빈번한 환매는 딤성본드의 처분가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채권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할인률이 적용되어만 할 수 있으며, 낮은 매매가격으로 인해 펀드수익을 낮아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채권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채권의 만기상환 이외에는 자금회수의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충분한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항시 유지할 계획이오나 전시, 천재지변, 정부 정책의 변화, 펀드 도피현상, 증시위기 등 기타 예상치 못한 경우에도 현금성 자산의 보유 수준이 충분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투자자산의 가격변동에 의한 운용 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에 투자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 일반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특수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기타 투자위험 등 :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가. 일반위험 | |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집합투자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피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 해외 자산에의 투자는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 간의 환율변동에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헷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roll over, NAV 변동, 선물/선도환 시장 변화, 목표비율과 실제비율과의 차이, 환헷지 시행 수준, 또한 시장상황에 따른 대체통화(USD)를 활용한 헷지로 인한 환율 변동 관련위험은 남아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역외 위안화 표시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입니다. 그리고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USD)에 대하여 주로 환위험을 회피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대상 국가 및 투자대상 유통국가의 사회, 정치 및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 기타 예상치 못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이자율 변동위험 |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적격등급이상(A-)이상 채권 [외화표시 채권의 경우 Moody's와 Standard & Poor's 가 최소 투자등급 Investment Grading으로 구분한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이 제약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
| 파생상품투자위험 |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나. 특수위험 | |
| 국가위험 | 이 투자신탁은 역외 위안화 (RMB) 표시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상황 등과 관련된 위험에 노출됩니다.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경, 시장, 정치, 경제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투자자산의 가치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외환거래 제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는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과 관련된 위험을 수반합니다. 증권관련 공시자료의 신뢰성 결여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이 위탁운용하는 위탁자산의 운용방법 및 성과 |

| | |
|---|---|
| | 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로 인해 본 투자신탁의 성과에도 유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 중국 시장 관련 위험 | 본 투자신탁은 중국본토 역외발행 위안화 표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사회, 정치, 경제 여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근 중국은 많은 부분에서 경제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은 다소 시험적이고 전례 없는 부분이 있으며, 따라서 정책의 실현 가능여부 및 향후 경제전망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중국의 회계기준은 IFRS등 기타 국제회계기준 및 관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채권평가에 있어 그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 관련 결제 및 청산 시스템 또한 그 온전성이 아직 완벽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 장애, 업무비효율성 등 각종 시스템 관련 위험이 존재합니다. |
| 중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및 통제 위험 | 위안화는 현재 환전이 자유로운 화폐가 아니며 중국 당국의 외환정책의 통제하에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통화량 및 환율 조정 등)에 의해 중국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채권 발행회사의 영업실적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 발행회사의 신용도 및 채권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사업이윤 및 투자자본금의 본국 소환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 채권에 대한 원리금 지급 및 기타 채무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환율 변동 위험 | 위안화는 KRW 및 UDS 대비 절상될 수도 있지만 절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 변동에 의한 손실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
|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 관련 위험 |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국가 및 유가증권 발행지 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 및 사업이익 등과 관련된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RMB 채권의 과세당국은 채권발행 주체의 소재지, 운용주체, 기타 사실관계 등에 따라 중국, 홍콩 또는 제 3의 국가도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 세법 및 세제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예상치 못한 세법의 변경, 재.개정 및 과세당국의 입장변화 등에 따라 추가 세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가 소급 적용될 경우 본 투자신탁의 자산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특혜 등이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해외에서 납부된 세금에 대해 투자자는 양 국가 간에 이중과세조정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역외 위안화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채권의 발행자가 중국기업일 경우 중국세법에 의해 이자소득의 10%가 원천징수 됩니다. 자본이득의 과세여부에 대해 중국당국은 그 입장을 명확히 밝힌바 없어 추후 중국당국의 입장변화에 따라 세금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본토 세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본 투자신탁은 자본이득의 10%를 외국세액 납부목적의 충당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자본이득에 대한 최종납부세액이 10% 수준일지에 대해서도 확인된 바 없어, 충당금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으로 납부하게 될 것이므로 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행상 홍콩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없으며, 본 투자신탁은 홍콩에 사업소재지가 없으므로 홍콩법상 사업소득세 또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투자신탁은 홍콩소재의 운용사와 위탁운용관계를 맺고 있는점과 역외위안화표시 채권에 대한 과세당국의 제도 |

| | |
|--------------------------|---|
| | 또는 입장 변화에 따라 과세여부가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세제의 변화는 본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해당 투자시점에 따라 득이 되거나 또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본인의 납세의무에 대해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유동성 관련 위험 | 본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 역외 발행 위안화 채권에 투자를 주 목표로 합니다. 투자대상이 현재까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 되는 시점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물량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본 투자신탁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채권 매매 시 비교적 큰 할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본 투자신탁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채권 발행사 신용위험 | 투자대상등급 (Investment Grading)의 채권은 투자 원리금의 상환가능성이 높은 채권이지만 투자등급은 발행회사의 과거 영업 실적 및 신용상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등급이 항상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영업 여건의 악화 및 기타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투자등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 채권의 처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분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수 있으며 처분 시점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사의 부도, 파산, 정리, 해산, 지급불능 등 기타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채권의 회수가치가 훼손될 수 있으며 때로는 회수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본 투자신탁의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 본 투자신탁은 환헷지 거래를 위해 은행, 증권사 등 기타 금융사와 선물, 선도, 스왑 등 파생상품 거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노출되며, 거래상대방의 부도, 파산, 정리, 해산, 지급불능 등 기타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해외 수탁 관련 위험 | 외국통화증권은 해외에서 적법한 인가를 받은 보관대리인에 의해 수탁됩니다. 하지만, 해외 수탁회사와의 계약관계는 본 투자신탁의 수탁회사가 관리하며, 따라서 본 투자신탁 관련 수탁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본 투자신탁의 수탁회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외 수탁사의 계약불이행 등의 위험은 존재합니다. |
| 자금 송환위험 | 본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자소득, 매매차익, 투자원금 등의 본국송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미개발 국가 투자에 따르는 위험 | 미개발 국가 관련 투자는 정부의 불안정성, 산업기반의 다변화 부족, 제한적인 증시규모 등 기타 거시경제 요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선진국가의 증시보다 비교적 변동성이 큰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비거주자)의 투자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대상, 투자금액, 자금회수 등과 관련하여 정부의 승인, 허가 및 각종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미개발 국가의 거시경제 요건은 선진국과 상이할 수 있어 경제여건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 전반에 있어 정부 관여가 비교적 크거나 빈번할 수 있는 반면, 규제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통용되는 국제적 기준 (IFRS)등이 통용되지 않을 수 있고 기타 사유로 투명성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채권 발행사에 관한 중요한 정보의 입수가 어렵거나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요건은 자산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은 역외 위안화 표시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중간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중국시장의 변화와 역외 위안화 표시 채권 등의 가격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이상입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및 펀드예시(주)]

| 위험등급 | 분류기준 | 상세설명 |
|------|---------|--|
| 1등급 | 매우높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30% 이상인 금융공학형집합투자기구 •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 분산요건을 충족하되,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2등급 | 높은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0%이상 -30% 미만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 분산요건을 충족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3등급 | 중간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자산에 최대 50% 미만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상 -10% 미만인 금융공학형 집합 |

| | | |
|-----|---------|--|
| | | 투자기구 •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4등급 | 낮은위험 | •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투자적격등급(BBB- 이상) 채권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차익거래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5등급 | 매우낮은 위험 | •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주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UBS자산운용(주)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책임운용전문인력(2011.1.11 현재)

가. 운용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 다른운용 자산규모 | |
| 이경수 | 1975 | 부장 | 16 개 | 1,454 억 | - 연세대 경제학 |
| | |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 - 서울대 국제대학원 |
| | | | - | - | - 이머징 시장 조사 및 세일즈 업무 7년 |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추이 (세전기준)

: 신규펀드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구분 | 지급비율 | | 지급시기 |
|---------|--|-----------------|------|
| | 종류 A | 종류 C, C-E 및 C-F | |
|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0.3% 이내 ^㉞ | - | 매입시 |
| 후취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 - |
| 환매수수료 | 3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 90 일 미만 : 이익금의 30% | | 환매시 |

주) 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납입금액의 0.3%이내에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

나. 집합투자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분 | 지급비율(연간, %) | | | | 지급시기 |
|-------------------------|-------------|--------|--------|--------|--------|
| | 종류A | 종류C | 종류C-E | 종류 C-F | |
| 집합투자업자보수 | 1.000% | 1.000% | 1.000% | 1.000% | 3개월 후급 |
| 판매회사보수 | 0.300% | 0.600% | 0.400% | 0.050% | |
| 신탁업자보수 | 0.050% | 0.050% | 0.050% | 0.050% | |
| 일반사무관리보수 | 0.018% | 0.018% | 0.018% | 0.018% | |
| 기타비용 ^{주1)} | 실비 | 실비 | 실비 | 실비 | 사유발생시 |
| 총보수 및 비용 ^{주2)} | 1.368% | 1.668% | 1.468% | 1.118% | |
| 증권거래비용 ^{주3)} | 실비 | 실비 | 실비 | 실비 | 사유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 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 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 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 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양 국가 간에 이중과세조정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China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China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역외 위안화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채권의 발행자가 중국기업일 경우 중국세법에 의해 이자소득의 10%가 원천징수 됩니다. 자본이득의 과세여부에 대해 중국당국은 그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추후 중국당국의 입장변화에 따라 세금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본토 세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본 투자신탁은 자본이득의 10%를 외국세액 납부목적의 총당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자본이득에 대한 최종납부세액이 10% 수준일지에 대해서도 확인된 바 없어, 총당금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으로 납부하게 될 것이므로 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행상 홍콩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없으며, 본 투자신탁은 홍콩에 사업소재지가 없으므로 홍콩법상 사업소득세 또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투자신탁은 홍콩소재의 운용사와 위탁운용관계를 맺고 있는점과 역외위안화표시 채권에 대한 과세당국의 제도 또는 입장 변화에

따라 과세여부가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세제의 변화는 본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해당 투자시점에 따라 득이 되거나 또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본인의 납세의무에 대해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 구분 | 내용 |
|----------------|--|
|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준가격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 [서류공시] 판매회사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매입 및 환매절차

(1)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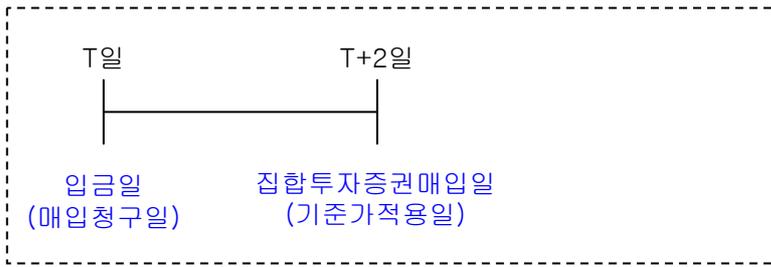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2) 오후 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2)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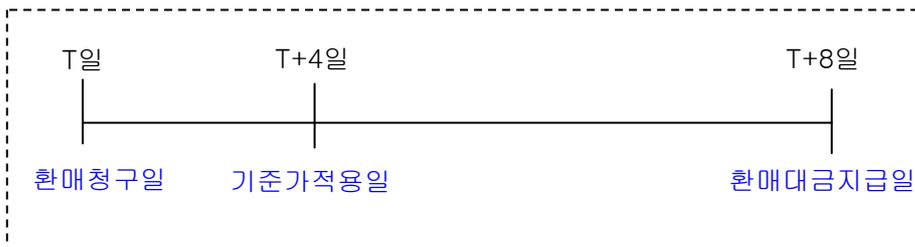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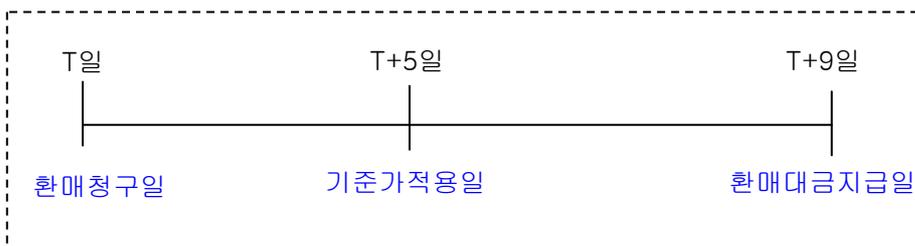
1)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2)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6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환매시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나 수익증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30 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 90 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30%

※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금액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4.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IV. 요약 재무정보

: 회계기간 경과 전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